

춘천지방법원 2023. 4. 25 선고 2022가단3637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욱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민성진, 류한호

피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홍열

변 론 종 결 2023. 3. 7.

판 결 선 고 2023. 4. 25.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체결된 2020. 11. 5.자 채무변제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4,645,18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B에게 양도하고, 의료법인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B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유통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B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가단60165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여 2012. 5. 30. 위 법원으로부터 ‘B은 주채무자로서 그 연대보증인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등을 포함한 구상금 306,549,197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304,719,287원에 대하여 2011. 5. 25.부터 2011. 12. 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제1심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2. 6. 23.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위 판결을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20. 11. 5. B과 사이에 ‘피고가 같은 날(2020. 11. 5.) B에게 150,000,000원을 대여하고, B이 위 금원을 2020. 11. 11.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며(이하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이라 한다) 위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집행인락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증인 D 작성 증서 2020년 제231호. 갑 제6호증,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B이 제3채무자 의료법인 C(이하 ‘소외 재단’이라 한다)으로부터 지급받을 급여 및 퇴직금에 대하여 2021. 4. 15.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춘천지방법원 2021타채357, 이하 ‘위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마. 원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B이 제3채무자인 소외 재단으로부터 지급받을 급여 및 퇴직금에 대하여 2021. 7. 8.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춘천지방법원 2021타채13539)을 받았다.

바. 원고의 이 사건 확정판결금 채권 잔액은 2021. 6. 6.을 기준으로 616,985,128원이다. B이 2022. 8. 31.까지 소외 재단으로부터 받은 급여 중 피고가 위 전부명령에 의하여 소외 재단으로부터 받은 금액은 74,645,183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 7호증(특별히 표시하지 않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1) 피보전채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확정판결금 채권은 그 판결확정일인 2012. 6. 23. 발생하여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 체결일인 2020. 11. 5. 이전에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확정판결금 채권은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의 취소를 구할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가) 무자력상태의 채무자가 기존채무에 관한 특정의 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자가 가지는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음으로써 강제집행절차를 통하여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게 할 목적으로 그 기존채무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어 채권자가 채무자의 그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은 경우에는 그와 같은 공정증서 작성의 원인이 된 채권자와 채무자의 합의는 기존채무의 이행에 관한 별도의 계약인 이른바 채무변제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다른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하여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33884 판결 등 참조).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 중 일부에게만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그 채무의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채권 기타 적극재산을 양도하는 행위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하는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28045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 및 갑 제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B은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 체결일 당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확정판결금 306,549,197원 및 그 지연손해금 채무,

E 주식회사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대한 채무가 있었고, 별다른 적극재산을 보유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B은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 당시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B은 피고로부터 기존 차용금 채무에 대한 변제 독촉을 받았고(B이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이전에 피고로부터 실제로 금원을 차용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나 B이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는 피고 주장이 사실이라는 전제 하에 살펴본다), 이에 위 차용금 원리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고와 사이에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피고가 그 공정증서로 B의 급여채권에 관하여 전부명령을 받을 것’을 피고에게 제안하였으며, 피고가 이를 승낙한 점, 이에 따라 B이 피고에게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해주는 방식으로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되었고, 피고는 위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B의 급여 및 퇴직금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의 원인이 된 피고와 B 사이의 합의는 기존 채무의 이행에 관한 별도의 계약인 채무변제계약에 해당하고 실질적으로 여러 채권자 중 피고에게만 자신의 급여채권을 양도하는 것이어서 다른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다. 무자력 상태였던 B은 이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B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

3) 수익자의 선의 여부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이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는바(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이전에도 B이 부도를 내어 신용불량자가 되었음을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수익자인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취소하고 채무자의 책임재산에서 일탈한 재산을 회복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권리이므로, 원상회복을 가액배상으로 하는 경우에 그 이행의 상대방은 채권자이어야 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84352 판결 등 참조). 다른 채권자가 민사집행법 등의 법률상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채권자를 상대로 하여 안분액의 지급을 직접 구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다거나 취소채권자가 인도받은 재산 또는 가액배상금의 분배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3783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와 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위 전부명령을 받은 피고가 제3채무자인 소외 재단으로부터 B의 급여채권 중 74,645,183원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수익자인 피고는 위 74,645,183원을 원상회복하여야 하고, B에 대한 다른 채권자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취소채권자인 원고에게 위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이미 지급받은 위 74,645,183원과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가 아직 지급받지 않은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B에게 양도하며, 소외 재단에게 위 채권을 B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원두

별지